〔 노사합의서 〕

부천도시공사(이하 "공사" 라 한다)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(이하 "노동조합" 이라 한다)은 2023년도 1/4분기 및 2/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(2023.06.29.)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육아휴직 사용기준 개선을 위해 취업규정 제89조(육아휴직)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단, 부천시의 승인을 얻고 부천도시공사 취업규정을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제89조(육아휴직)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휴직의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남녀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합산하여 3년 이내로 하며, 그 밖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 ② ~ ③ (생 략)	제89조(육아휴직)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휴직의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남녀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하며, 그 밖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2. 특별유급휴가 부여기준 완화를 위해 취업규정 제32조(특별유급휴가) 제①항 12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 단, 부천시의 승인을 얻고 부천도시공사 취업규정을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제32조(특별유급휴가) ① 1. ~ 11.(생 략) 12. 사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낸 직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 략)	제32조(특별유급휴가) ① 1. ~ 11.(현행과 같음) 12. 사장은 지역의 재해·재난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,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낸 직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3. 임금역전 현상에 따른 불합리한 봉급기준표 개선을 위해 보수규정 별표2 직원의 봉급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 단, 부천시의 승인을 얻고 부천도시공사 보수규정을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.

구 분	호 봉	현 행	개 정(안)
일반직 9급	**2**	87.36%	**87.70%**
	3	85.50%	**86.40%**

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6. 29.

사장인

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

위 원 장 박 만 호

박 만 호

위원장인

부 천 도 시 공 사

사 장 원 명 희

원 명 희

부천시 사장

〔 노사합의서 〕

부천도시공사(이하 "공사" 라 한다)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(이하 "노동조합" 이라 한다)은 2023년도 3/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(2023.09.20.)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합리적인 공로연수 시행을 위해 인사규정 제36조(공로연수)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단, 부천시의 승인을 얻고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을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. 적용시기는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제36조(인사규정) ① 공사의 정규 직원 중 정년이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	제36조(인사규정) ① 공사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정규 직원 중 정년이 6개월 이내인 자,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정규 직원 중 정년이 12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2. 보수규정에 업무대행수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단, 부천시의 승인 및 부천도시공사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※ 관련 수당 없음	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. 월 지급금액 = 20만원 × $\frac{1}{\text{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}}$

3. 보수규정에 스포츠센터 강사 자격수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단, 부천시의 승인 및 부천도시공사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※ 관련 수당 없음	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 중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보유자는 월 50,000원,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유자는 월 30,000원의 자격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4. 공사는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등 법정 감염병(1급~4급) 확진 시 병가 일수 3일에 한하여 100% 유급으로 한다.(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관련)

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9. 20.

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	부 천 도 시 공 사
위 원 장 박 만 호	사 장 원 명 희

〔 노사합의서 〕

부천도시공사(이하 "공사" 라 한다)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(이하 "노동조합" 이라 한다)은 2023년도 4/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(2023.12.26.)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직원들의 합리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위해 단체협약 제28조(연차휴가)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제28조(연차휴가) ① 조합원의 연차휴가는 관련규정에 따르되, 사전에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 단, 사전 결재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략)	제28조(연차휴가) ① 조합원의 연차휴가는 관련규정에 따르되, 사전(당일 포함 근무개시 이전)에 결재를 상신한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 단 사전(당일 포함 근무 개시 이전)에 결재를 상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12. 26.

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
위 원 장 박 만 호

부 천 도 시 공 사
사 장 원 명 희